

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1. 4. 2

발 의 자 : 노상익의원의외 17명

1. 제안이유

-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제정된 현행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
- 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음.

2. 주요골자

- 제1조(목적)의 관계법령의 시행령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표기함.
- 제2조(위원회 구성)의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
 -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민단체를 포함하고
 - 목포시의회 의원을 2명 이상으로 규정함을 신설함.
 -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4조(심의사항)을 법의 개정 내용에 맞도록 내용을 개정
 - 1)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
 - 2)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3. 개정조례안 : 별첨.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.

5. 관계법령 : 별첨.

- ①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
- ②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

③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

④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

6. 예산사항 : 해당없음.

7. 관련부서의견 : 해당없음.

8. 사전협의사항 : 해당없음.

9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.

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.

1. 목포시 과장급이상 공무원중 토지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
2.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토지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
3. 변호사
4.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5. 지역사정에 정통한자나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)에서 추천한 자

6. 목포시 의회의원(2인이상)

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.

1.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
2.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3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회의소집)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 이상 소집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제2호,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간사는 토지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3. 서기는 토지관리업무 담당이 된다.
4.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일비와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~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,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상의 공무원 5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.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.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<p>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목포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 토지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.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토지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. 변호사 4.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.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나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)에서 추천한 자 6. 목포시 의회의원(2인 이상) <p>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.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3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<p>제5조(회의소집)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간사 등) 1.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간사는 토지행정담당주사가 된다. 3.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. 4.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 <p>제8조(수당)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.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<p>제5조(회의소집)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이상 소집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간사 등) 1.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간사는 토지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 3. 서기는 토지관리업무 담당이 된다. 4.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 <p>제8조(일비와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